

하남시 고시 제2018-2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신장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정정) 고시

하남시 고시 제2017-187(2017.12.28.)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장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된 하남시 신장동 521-3번지 일원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.

2018. 1. 5.

하 남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
나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- 정정사항 반영

■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당초 고시	303	공공청사	차량등록사업소	신장동 521-3 일원	-	증)1,437.7	1,437.7	경고 제91-82호 (91.3.15)	
정정 고시	303	공공청사	차량등록사업소	신장동 521-3 일원	-	증)1,434.7	1,434.7	경고 제91-82호 (91.3.15)	